



### OCS,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여부

전도유망하던 OCS시장에 예기치 않은 악재가 2003년 초부터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기 성격이 강한 OCS를 통한 1회용컵 사용을 계몽 단속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대상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만약 OCS가 신고포상금제 도입대상 품목에 포함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서비스기로서 입지가 굳어진 OCS가 신고포상금제 대상이 된다면 자파라치들에 있어 가장 쉽고도 구미가 당기는 대상품목이 될게 자명한 일이다. 또한 사업장 업주들 역시도 골칫덩어리가 될 OCS를 더 이상 선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OCS는 신고포상금제라는 거대 암초에 좌초될 위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 절대 절명의 위기가 될 신고포상금제 도입대상에 있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제외가 되었다. 환경부는

2003년 9월, 2004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신고포상금제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는 제외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업주의 사유재산 측면과 OCS가 갖는 서비스기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결과이다. 만약 OCS를 신고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면 사유 재산권 침해, 관련 업계의 생존권 침해 등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정부도 OCS기기가 갖는 특성을 인정하고 신고포상금제 대상 품목에서는 제외를 한 것이다. 혹시나 하며 가슴을 졸였던 업계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고포상금제의 서슬 퍼런 화살은 일단 OCS를 비켜 지나갔다.

### 그렇다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으로부터도 자유로운가

결론부터 말해 신고포상금제를 피해 나갔다 할지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대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즉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1회용품 계몽 및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지자체의 단속의 강도가 얼마나 될지 여부이다. 지금같이 OCS기기의 1회용컵 사용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단속이 지지부진한 정도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과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일단 OCS의 운영자들이 지자체 단속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과거보다 OCS의 상용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는 OCS의 신규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시장은 침체에 빠질 확률이 크다.

OCS가 지자체 단속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은 그 제품 성격이 서비스기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형자판기의 경우는 영업용기기이고 업소 내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에 반해 OCS는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1회용품 단속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가 되기 힘들다.

결국 OCS가 지자체 단속까지 피하기 힘든 현실에서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지자체 단속이 힘든 현실성을 그대로 믿고만 있다가는 큰 코가 닳칠 위험성이 크다.

### 어떠한 대책들이 있나

가장 확실한 대책은 OCS에서 발생하는 종이컵에 대한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컵을 회수를 해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업소에 비치하고 있다면 지자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OCS 관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회용품에 배출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지자체 단속을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OCS 업체차원에서 재활용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일이 수거 및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그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다. 또 수거 전문업체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개별OCS업체 차원에서 실시하기는 힘든 일이다. 만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하더라도 OCS 사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해 진다.

따라서 OCS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접근하기 힘든 방법이다. 또 지자체 단속의 과장이 어느 선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불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냐 하는 부정론이 현재로서는 크게 작용한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은 정말 위기상황에서나 모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 단속에 case-by-case로 대처해 나가다가 상황이 정말 악화되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상황이 될 때에서나 실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지자체 단속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OCS에 사용되는 용기로 1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플라스틱 재질로 1회 사용이 아니라 세척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컵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다. OCS 운영주들 역시 지자체 단속이 강화가 되면 좀 번거스럽기는 하더라도 다회용품 사용에 그다지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각 OCS 업체들도 현재 이러한 다회용컵을 개발해 놓고 위기의 상황에 대한 대비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많이 다회용컵이 보급되느냐는 순전히 지자체 단속의 강도에 달려 있다.

또 다른 지자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OCS 커피를 유료화하는 방법이다. 적어도 50원 이상 커피가격을 세팅해 놓고 유료화를 한다면 OCS

를 놓고 단속대상으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비스 기기 성격으로 굳어진 OCS 커피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계 본연의 존재가치도 떨어지고 이용 효율성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유료로 하면서도 이러한 파장을 극소화하는 방법은 최소 금액 10원에 세팅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 그 금액을 무상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편법이다. 또 이에 대해 지자체 단속팀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OCS의 1회용품 사용규제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산업계도 이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편리성과 환경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구전일 수밖에 없다. 일방적 승자가 단기간 결정되는 관계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산업계가 솔선수범하며 환경문제 개선에 동참하며 OCS에 대한 1회용품 단속 수위를 낮춰 나가야 할 것이다.

## | 환경부 보도자료 |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 2004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03년 9월 4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시달렸다.
- ◆ 동 지침에 의하면 주민이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 ◆ 즉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는 금년 말까지 자치단체별로 신고포상금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 1.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대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동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대상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제곱미터 미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위반행위에 따라 3~3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붙임1)
-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 피 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은행계좌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

### 3. 신고 및 포상금 지급방법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발견한 자는 위반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환경과(또는 청소과)에 신고
  - 전화, FAX, 우편, E-mail,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시기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음
  - 위반행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피신고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위반행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신고자의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확인 하고 난 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5. 홍보 및 시행일

- 신고포상금제도는 04. 1.1부터 시행
- 03. 12월까지 조례 제정 및 주민 홍보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 상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부 과 대 상				
3.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다. 백화점 대형점 쇼펍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포 상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 ·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10	30	50	3
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7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